####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7 2015. 7.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 6. 12.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5. 6. 17.

4.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7. 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 Ⅱ. **제안설명** (재무국장 : 박재민)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예비비 예산액은 1,756억원이고, 이 중 32건, 299억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의 95.7%인 286억원을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원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10억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9건,
   279억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지출결정액의 95.3%인
   266억원이고, 집행잔액은 4.7%인 13억원임
- 주요 지출내역은 DMC용지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120억원, 공영주차장 부당이득 반환금 31억원, 긴급조치
   안전예산의 예비비 사용 20개 사업, 65억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에서 446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이중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건. 20억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내역은 신정로 확장에 따른 시설비 15억원, 중랑 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5억원임

##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 엄지운)

##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개요

○ 예비비 예산 1.756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98억 5,200만원 중

지출액은 286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000만원임

#### 〈표 3-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75,605	29,852	28,632	28,632	0	1,220
일반회계	130,951	27,884	26,665	26,665	0	1,219
특별회계	44,654	1,968	1,967	1,967	0	1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1,309억 5,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78억 8,400만원 중

지출액은 266억 6,500만원이고

이월액은 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900만원임

## 〈표 3-2〉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30,951	27,884	26,665	26,665	0	1,219
일 반 공	공 행 정	130,951	907	752	752	0	155
공공질시	네및안전		400	375	375	0	25
11/	육		300	300	300	0	0
문 화 및	및 관 광		540	456	456	0	84
환 경	보 호		850	850	850	0	0
사 회	복 지		608	607	607	0	1
보	건		762	757	757	0	5
수송 및	빚 교 통		3,434	3,383	3,383	0	51
국토및지	지역개발		13,868	13,784	13,784	0	84
7]	타		6,215	5,401	5,401	0	814

○ 특별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446억 5,4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지출액은

이월액은

집행잔액은

19억 6,800만원중

19억 6,700만원이고

0원이며

100만원 임

## 〈표 3-3〉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 <u>출</u> 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44,654	1,968	1,967	1,967	0	1
기타특별회계	34,623	1,968	1,967	1,967	0	1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16,636	0	0	0	0	0
교 통 사 업	3,855	0	0	0	0	0
광역 교통 시설 사업	746	0	0	0	0	0
주 택 사 업	4,038	0	0	0	0	0
도 시 개 발	2,683	1,492	1,491	1,491	0	1
하 수 도 사 업	1,502	476	476	476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4,834	0	0	0	0	0
한 강 수 질 개 선 사 업	329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10,031	0	0	0	0	0
지 역 개 발 기 금	2,059	0	0	0	0	0
상 수 도 사 업	7,972	0	0	0	0	0

## 2. 검토요지

-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중 예비비 관련 조항이 신설된 바 예비비 결산결과에 대해 별도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1)
-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14년 10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sup>2)</sup>를 제정한 바 「**서울특별** 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금번 정례회중 의결받고 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것임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근거하 여3)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 2015년도 현재 일반회계 **예비비**는 '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 법」제43조<sup>4)</sup>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 목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sup>1)</sup> 지방재정법 제43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up>2)</sup>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up>3)</sup>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up>4)</sup>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4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5)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1,51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을 통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1,309억 5,100만원(특별회계 예비비 446억 5,400만원 별도)으로 조정하였음
- 어 서울시의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편성된 예비비 1,756억 500만원중 32개 사업에 298억 5,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86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4) 예비비 지출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가)		(나)	(다)	(가니-다)
	소계	175,605	29,852	28,632	28,632	0	1,220
2014	일반회계	130,951	27,884	26,665	26,665	0	1,219
	특별회계	44,654	1,968	1,967	1,967	0	1
	소계	130,589	70,346	65,864	65,660	204	4,482
2013	일반회계	92,975	62,353	57,874	57,834	40	4,479
	특별회계	37,614	7,993	7,990	7,826	164	3
	소계	201,839	140,968	136,506	132,050	4,453	4,465
2012	일반회계	139,755	132,987	128,525	124,069	4,453	4,465
	특별회계	62,084	7,981	7,981	7,981	0	0

<sup>5) 「</sup>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삭제

<sup>※</sup> 삭제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14. 7.30 삭제).

#### 〈표 3-5〉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sup>주1)</sup>

(단위: 백만원, 건)

실・본부・	국	지출결	정액	실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건수
소	계	29,852	(100.0)	28,632	_	1,220	32
경 제 진 흥	본 부	12,763	42.8	12,763	_	_	3
행 정	국	6,231	20.9	5,262	_	969	6
도 시 교 통	본 부	3,112	10.4	3,109	_	3	1
도 시 안 전	본 부	2,440	8.2	2,392	_	48	5
푸 른 도	시 국	1,525	5.1	1,441	_	84	3
복 지 건 강	본 부	1,213	4.1	1,208	_	5	3
한 강 사 업	본 부	850	2.8	850	_	_	1
주 택 건	축 국	380	1.3	380	_	_	2
시 립 미	술 관	350	1.2	290	_	60	1
서울시립[	대학교	300	1.0	300	_	_	1
소 방 재 난	· 본 부	250	0.8	225	_	25	1
문화체육관	광본부	190	0.6	166	_	24	1
여성가족경	정 책 실	157	0.5	155	_	2	3
기 획 조	정 실	91	0.3	91	_	_	1

<sup>※</sup>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없음

○ 예비비의 편성취지가 당해 회계연도에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 및 행정자 치부예규로써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바

## (표 3-6) 예비비의 지출제한<sup>주1)</sup>

실 정 법 적 제 약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내 재 적 제 약 (행정자치부예규)	<ul> <li>●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li> <li>●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li> <li>●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li> </ul>

※ 주1)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59

- 2014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32개 사업, 286억 3,200만원)의 경우,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예규를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 로 사료됨
  - 실제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소관 **과오납 반납**은 마포구 상암 동 DMC 부지6)에 대한 매매계약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14년 1월 23일 해제<sup>7)</sup>됨에 따라 계약대상자인 서울신문컨소시엄이 기납 부한 토지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예비비 119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8)
  - 행정국 인사과 소관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은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증액,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강 보험료 가지급금 4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sup>6)</sup> 마포구 상암동 1.650번지, 대지면적 2.923㎡

<sup>7)</sup> 투자유치과-1279('14, 2.14) "서울신문(E2-2필지)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 조치계획"

<sup>8)</sup> 투자유치과-1473('14. 2.21) "DMC E2-2필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 반환금 예비비 사용계획" - 토지 매매대금 161억원중 119억 6,300만원을 반환함에 따라 41억 3,400만원은 서울시 수입임

- 또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는 가재울뉴타 운3구역 정비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고자 예비비 31억 900만원이 지출된 것임9)
- 아울러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sup>10)</sup>에 따라 20개 사업에 예비비 64억 8,700만원을 지출결정한 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해당예비비 지출결정이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예규를 벗어난 예비비 지출 사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예비비 지출사례중 서울대공원 소관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의 경우, '13년 11월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이후 '14년도 본예산에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포함된 103억 4,000만원이 편성<sup>11)</sup>되었음에도 동년 5월,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비비 12억 2,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 6,300만원을 지출한 바
  - 예비비 지출에 따른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동 사업내용이 예비비를 지출결정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기 보다는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기 보다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세출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방안도 예비비 지출결정에 앞서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sup>9)</sup> 특별회계 예비비가 부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함

<sup>10)</sup> 예산담당관-6151('14. 5.21)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sup>11)</sup>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은 '13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나, '14년도에는 103억 4,000만 원 편성됨(동물탈출방지 관련 15억원, 동물사 및 방사장 안전시설 17억원, CCTV설치 26억원, 시설물 옥상방수 과련 14억원, 시설장비 개선 27억원 등)

## 〈표 3-7〉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관련 예비비 지출 산출내역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단위 · 전원) 산 출 근 거					
 계	10,340,000							
			① 돌고래관 안전시설 보수·정비공사 : 50,000천원					
	비 10,340,000	1,225,000	② 자연캠핑장 위험시설 정비: 300,000천원					
시설비			③ 곤충관 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305,000천원 • 비상계단 및 비상출구 설치공사 25,000천원 •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보완공사 100,000천원 • 전기시설 점검 및 보강공사 150,000천원 • 전후면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30,000천원					
			④ <mark> </mark>					
			⑤ 동물한마당 다람쥐원숭이사 펜스설치: 70,000천원 • 유리펜스 교체 90M*1.5M = 40,000천원 • 연못 복토 및 전책 철거 = 15,000천원 • 보드블록 교체 5000장 =15,000천원					
			<ul> <li>⑥ 남미관 보수 및 정비 공사: 300,000천원</li> <li>○ 옥상방수 500㎡×200천원/㎡=100,000천원</li> <li>○ 동물사 보수 8개소×20,000천원/㎡=160,000천원</li> <li>○ 건물 균열,단면 보수200㎡×200천원/㎡=40,000천원</li> </ul>					

- 한강사업본부 소관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의 경우,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라 예비비 8억 5,000만원을 지출결 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으나 동 사업은 2014회계연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 편성요청된 시설비중 5,000만원이 감액의결된 바 있음
  - 사업주관부서는 본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사업내용(가양구름다리 주변 환경정비)과 예비비가 지출된 사업내용(제방법면 균열 및 보강토 옹벽 보수·보강)에 차이가 있어 예비비가 지출결정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 행정자치부는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삭감된 지출항목은 "예산과목"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현행 행정자치부 예규도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 지출을 제약하고 있어 동 예비비 지출건이 예비비의 지출제한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지방재정법」제43조③항을 신설하여<sup>12)</sup> '15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강화한 바 향후 동 예비비 지출건과 유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동 예비비 지출사례가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선제적으로 대처 하고자 한 것이라고는 하나 예비비 지출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본

<sup>12)</sup>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u>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예산의 부족재원에 대해 예비비가 보조재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 3-8〉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관련 예비비 지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산 출 근 거
시설비	1,378,000	850,000	① 풍화암균열 및 낙석으로 인한 제방 법면유실 방지 · 낙석구간 법면정리 (900㎡) · 식생블록설치 (1,200㎡) · 기타부대공사 1식 ② 한강범람으로 인한 보강토옹벽 유실 방지 · 보강토옹벽 보수 · 기타부대공사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도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라 예비비 7억원 이 지출된 것이나 이미 '14년도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 여 10,000개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사업을 보강하고 자 추진하던 사업임

#### 〈표 3-9〉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관련 예비비 지출 산출내역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산 출 근 거
자치단체 경상보조	550,000	700,000	① 골목형시장(151개): 20,145점포 × 30,000원 = 604,350,000원 ② 건물형시장(124개): 124개 × 771,371원 = 95,650,000원

○ 시립미술관 소관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의 경우에도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예비비 3억 5,000만원이 지출된 것이나 '14년도 본예산에 보일러,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개별형 냉난방기, 자동제어 센서 설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포함한10억 2,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른 예비비 지출건이라고 하나 본예산의 사업내용과 예비비 지출을 위한 산출내역을 검토할 때 예비비 지출이 본예산의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재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0〉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관련 예비비 지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산 출 근 거	
			∘ FCU 교체설치(119개×1,000,000원)	100
			∘ 배관 교체설치(1,600m×70,000원)	1100
	1,020,342	350,000	• 연도 교체 및 추가설치	15,000
공공운영비			• 밸브류 교체설치	50,000
			• 배관보온	10,000
			。 센서(온도,습도,CO2)교체설치	1000
			• 기타공사 1식	14,000
			• 설계용역	20,000

- 예비비는 긴급한 지출이나 예산외 초과지출에 한정하여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예비비 지출건이 긴급조치가 필요한 안전예산이라고는하나 이미 본예산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사업물량을 확대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에서 사업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의 경우에는 예비비 4억 5,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5,100만원이 지출된 바
  - 시립동부병원의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미 내구연한13)이 지나 오작동('13. 2)된 이후 정전에 따른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예비비 지출(3억 4,600만원)을 통하여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대한 교체 및 증설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표 3-11〉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관련 예비비 지출 산출내역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산 출 근 거
민간대행 사업비	_	456,000	① 시립동부병원(교체) 346,000 ② 시립북부병원(증설) 110,000

- 그러나 동 사업은 예비비 지출건과는 별개로 당초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세출예산을 편성할 세부사업이 없음에도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라 예비비 4억 5,600만원이지출된 것임14)
- 따라서 '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통하여 동 예비비 지출건은 물론 이에 대한 세부사업 신설을 사후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이후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는 기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소요예산 집행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sup>13) &#</sup>x27;02년 구입, 내구연한(10년)

<sup>14)</sup> 지출결정 '14. 5.21, 지출 '14. 8.11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나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 정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초과지출 하기 전에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경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대한 사전의결이라는 절차적 요건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표 3-12〉예비비 지출 현황 (지출결정액 3억원 이상)

					(단위 : 전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과오납 반납	11,963	11,963	0	0	DMC용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5,324	4,510	0	814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가지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영주차장 관리	3,112	3109	0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지급
신정로 확장	1,492	1491	0	1	보상비 증액소송 판결금 지급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225	864	0	361	자연캠핑장, 동물사 등 노후시설 긴급 보수보강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850	850	0	0	한강 제방, 옹벽 긴급 보수보강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700	700	0	0	전통시장 전기안전 취약지점 점검 및 긴급 보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520	520	0	0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인력운영비	476	476	0	0	중랑물재생센터 공무원 보수 부족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456	451	0	5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교체 및 증설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 사업	451	193	0	258	장애인시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긴급 설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387	233	0	154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비 부족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350	290	0	60	누전방지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가습용 배관교체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	322	274	0	48	정밀안전진단 D등급, 노후구조물 낙하대비 긴급보수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306	306	0	0	시립정신병원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교육지원환경개선	300	299	0	1	실험실 가스용기 별도장소 집합보관
	과오납 반납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공영주차장 관리 신정로 확장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선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인력운영비 시립병원 무정전 선원장치 교체 및 증설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 사업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기업한 유지관리 보수 기안전점검 및 보수 기업 기안 전환 기상 기	과오남 반남 11,963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5,324 공영주차장 관리 3,112 신정로 확장 1,492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225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45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520 이력운영비 476 시립병원 무정전 선원장치 교체 및 증설 456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456 자애인전환 서비스지원 사업 451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387 라임 기술관 유지관리 350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 306	과오납 반납 11,963 11,963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5,324 4,510 공영주차장 관리 3,112 3109 신정로 확장 1,492 1491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850 85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700 700 서월호 희생자 감동분향소 설치·운영 456 451 전위장치 교체 및 증설 사업	파오남 반남 11,963 11,963 0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5,324 4,510 0  공영주차장 관리 3,112 3109 0  신정로 확장 1,492 1491 0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225 864 0 한강공원 접근시설 용50 850 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700 700 0  세월호 희생자 함동분향소 설치·운영 520 520 0  인력운영비 476 476 0  시립병원 무정전 선원장치 교체 및 증설 456 451 0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 사업 451 193 0  세월호 희생자 함동분향소 설치·운영 387 233 0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350 290 0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 306 306 0	파오남 반납 11,963 11,963 0 0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5,324 4,510 0 814 공영주차장 관리 3,112 3109 0 3 신정로 확장 1,492 1491 0 1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225 864 0 361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700 700 0 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700 700 0 0 인력운영비 476 476 0 0 시립병원 무정전 선원장치 교체 및 중설 456 451 0 5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 사업 451 193 0 258 세월호 희생자 함동분항소 설치·운영 387 233 0 154 사립미술관 유지관리 350 290 0 60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 306 306 0 0

<sup>※</sup>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표 3-13〉예비비 지출 현황 (지출결정액 3억원 미만)

					(난위 : 전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재난위험시설물(D급) 정밀 안전 진단	280	280	0	0	재난위험시설(D급) 긴급 정밀안전진단
수난구조대 운영	250	225	0	25	수난구조대 바지선 주변 긴급 준설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200	200	0	0	낙상공원 미조성공원용지내 시설물 긴급 정비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90	165	0	25	잠실운동장내 옥외소화전 보수, 옹벽 긴급보강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150	150	0	0	재난위험시설(D, E급) 긴급 보수보강 공사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100	83	0	17	노후 전통시장(43) 긴급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00	98	0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5) 긴급 보수
재난위험시설물(E급) 정밀 안전진단	100	100	0	0	재난위험시설(E급) 긴급 정밀안전진단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0	95	0	5	응봉근린공원내 석축 붕괴 대비 긴급 보수보강 공사
기본경비	91	91	0	0	지방채 차환발행에 따른 수수료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37	37	0	0	송파 거여어린이집 긴급 보수 공사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0	20	0	0	서울여성보호센터 긴급 전기보수공사
	재난위험시설물(D급) 정밀 안전 진단  수난구조대 운영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참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재난위험시설물(E급) 정밀 안전진단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기본경비  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노숙인시설	대난위험시설물(D급) 정밀 안전 진단 250 나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200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90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150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100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00 재난위험시설물(E급) 정밀 안전진단 100 공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0 기본경비 91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0	대난위험시설물(D급) 정밀 안전 진단 250 225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190 165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90 150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100 8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00 98 재난위험시설물(E급) 정밀 안전진단 100 100 정밀 안전진단 100 95 기본경비 91 91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0 20	대난위험시설물(D급) 정밀 안전 진단 250 225 0 나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200 200 0 작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90 165 0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150 150 0 선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100 83 0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00 98 0 재난위험시설물(E급) 정밀 안전진단 100 100 0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91 01 0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0 0	대난위험시설물(D급) 정밀 안전 진단 250 225 0 25

<sup>※</sup>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Ⅳ. 질의토론 요지: 생략

∨.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547** 

제출일자 : 2015. 6.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309억 5,1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278억 8,400만원

- 지 출 액 266억 6.500만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12억 1,900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DMC용지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119억 6,300만원, 공영주차장 부당이득 반환금 31억 900만원 등 29건임.

(2)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346억 2,300만원

- 지 출 결 정 액 19억 6,800만원

- 지 출 액

19억 6,700만원

- 이 월 액

0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100만원이며

- · 그 사용내역은 신정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14억 9,100만원 등 3건임
- (3)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00억 3,100만원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0원임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 었던 자
-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예비비지출 내역

## 일반회계

	과목		TI 충 건 져 M	기초경점에 지출원인		01 51 01	N 의 에 지 및 TL 이	처리	l일자	MILIIITI 중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⑦	행 위 액 (J)	지출액 ©	이월액 ② ②	집행잔액 때=개-대-관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한	계		27,884,370,000	26,664,713,280	26,664,713,280		1,219,656,720			
기획조정실 재정 관리담당관	기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0,500,000	90,500,000	90,500,000			2014-12-22	2014-12-23	지방채 차환발행에 따른 수수료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가족및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 강	민간대행사업비	19,976,000	19,976,000	19,976,000			2014-05-21	2014-05-28	서울여성보호센터 긴급 전기보수공사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가족및여성	성매매피해여성 보 호 및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000	98,276,000	98,276,000		1,724,000	2014-05-21	2014-05-2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5개소) 긴급 보수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가족및여성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	자치단체자본보 조	36,870,000	36,870,000	36,870,000			2014-05-21	2014-07-09	송파 거여어린이집 긴급 보수 공사
경제진흥본부 소 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고도화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2014-05-21	2014-12-17	전통시장 전기안전 취약지점 점검 및 긴급 보수
경제진흥본부 소 상공인지원과	산업진흥・고도화	전통시장 구조안전 진단 및 안전조치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14-05-21	2014-06-16	노후된 전통시장 43개소 긴급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경제진흥본부 투 자유치과	산업단지	과오납 반납	과오납금등	11,963,052,000	11,963,051,510	11,963,051,510		490	2014-02-27	2014-03-04	DMC 용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사용 검토( 예산담당관-2310, `14,2.25)
복지건강본부 장 애인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전환서비스지 원 사업	민간대행사업비	451,430,000	451,430,000	451,430,000			2014-05-21	2014-09-16	장애인시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긴급 설치
복지건강본부 보 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시립정신병원 기능 보강	민간대행사업비	306,000,000	306,000,000	306,000,000			2014-05-21	2014-12-26	시립정신병원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복지건강본부 보 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시립병원 무정전 전 원장치 교체 및 증 석	민간대행사업비	456,000,000	450,651,000	450,651,000		5,349,000	2014-05-21	2014-08-11	시립병원에 설치된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도시교통본부 주 차계획과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	배상금등	3,112,379,000	3,109,130,000	3,109,130,000		3,249,000	2014-07-18	2014-07-18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지급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70,000,000	70,000,000	70,000,000			2014-05-15	2014-05-28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37,000,000	14, 172, 450	14, 172, 450		22,827,550	2014-09-03	2014-12-12	세월호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비 부족분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행사운영비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2014-05-15	2014-09-25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행정국 총무과	일반행정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행사운영비	350,000,000	218,146,300	218,146,300		131,853,700	2014-09-03	2014-11-25	세월호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비 부족분
행정국 인사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연 금부담금)	연금부담금	2,840,184,000	2,840,182,300	2,840,182,300		1,700	2014-12-06	2014-12-12	퇴직자수 증가 등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액 발생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b>9</b>	행 위 액 ①	<b>©</b>	@	(I)=(I)-(I)-(I)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사유
행정국 인사과	기타	인력운영비(통합연 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2,483,979,000	1,669,925,630	1,669,925,630		814,053,370	2014-12-06	2015-01-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가지급에 대한 건 강보험료 청구로 인한 재원부족
푸른도시국 공원 녹지정책과		응봉근린공원 노후 시설 정비	시설비	100,000,000	94,580,000	94,580,000		5,420,000	2014-05-21		응봉근린공원내 석축 붕괴위험 우려로 긴급 보수보강 공사
도시안전본부 안 전총괄과	재난방재・민방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2014-05-21	2014-06-20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공사
도시안전본부 도 로시설과	도로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322,000,000	274,252,300	274,252,300		47,747,700	2014-05-21	2014-07-17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노후 구조물 인근 주택가 낙하우려로 긴급 보수
주택건축국 건축 기획과	지역및도시	재난위험시설물 (D 급) 정밀 안전 진단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80,000,000	280,000,000	280,000,000			2014-05-21	2014-07-11	재난위험시설(D급) 긴급 정밀안전진단
주택건축국 건축 기획과		재난위험시설물 (E 급) 정밀 안전 진단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14-05-21	2014-07-11	재난위험시설(E급) 긴급 정밀안전진단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	수난구조대 운영	시설비	250,000,000	225, 199, 100	225, 199, 100		24,800,900	2014-05-21	2014-08-2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구조대 바지선 주변 긴급 준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총무과	고등교육	교육지원환경개선	시설비	300,000,000	299,674,100	299,674,100		325,900	2014-05-21	2014-10-29	실험실에 방치된 가스 용기를 별도의 장소 에 집합 보관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
체육시설관리사 업소 운영기획과	체육	잠실종합운동장 시 설 개·보수	시설비	190,000,000	165,735,580	165,735,580		24,264,420	2014-05-21	2014-08-29	잠실운동장내 옥외소화전 보수, 옹벽 긴급 보강
시립미술관 총무 과	문화예술	시립미술관 유지관 리	공공운영비	350,000,000	290,102,950	290,102,950		59,897,050	2014-05-21	2014-08-18	누전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가습용 배관교체
중부공원녹지사 업소 공원운영과	지역및도시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시설비	200,000,000	183,858,060	183,858,060		16,141,940	2014-05-21	2014-12-26	낙상공원 미조성공원용지내 시설물 긴급 정비
서울대공원 총무 과	지역및도시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1,225,000,000	1,163,000,000	1,163,000,000		62,000,000	2014-05-21	2014-10-08	자연캠핑장, 곤충관, 동물사 등 노후 시설 긴급 보수보강
한강사업본부 기 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2014-05-21	2014-07-22	한강 제방, 옹벽 긴급 보수보강

## 도시개발특별회계

	과	목			행 위 액   D D	이월액	집행잔액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 (라   - (라 	®=?P−CP−@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사유
	한	계		1,491,783,000	1,491,221,740	1,491,221,740		561,260			
도시안전본부 도 로계획과	도로	신정로 확장	시설비	1,491,783,000	1,491,221,740	1,491,221,740		561,260	2014-07-11	2014-07-16	보상비 증액소송 판결금 지급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⑦	지출원인 행 위 액 (J)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⑩=沙-따-라	처리일자		MI III III 콧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에비비지출 사 유
	ion	계		476,225,000	476,225,000	476,225,000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299,660,000	299,660,000	299,660,000			2014-12-18	2014-12-18	중랑물재생센터 공무원 보수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기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6,565,000	176,565,000	176,565,000			2014-12-18	2014-12-26	중랑물재생센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부 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